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6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소유재산의 평가방법(안 제8조)
- 나. 선정대리인의 신청·통지 등(안 제9조)
- 다. 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(안 제10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
- 2)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4. 23. ~ 5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5. 19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9조(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)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

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, 불복청구인, 대리인 지정일자,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정 대리인에 대한 적용례)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

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선 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영 제6 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 4조에 따른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(선정대리인 신청 · 통지 등)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 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 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울특별 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(이하 “규칙” 이라 한다)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을 선정하 고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 장” 이라 한다)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.</u></p>

<신 설>

③ 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· 불복청구인· 대리인 지정일자·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·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

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

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·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생략)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

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0조(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

-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으로 건당 15만원(국세청, 서울시 동일)

※ 2019년 이의신청건수 7건

## 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세무1과 차현숙 (☎ 3153-8715)